

제 목	국 문	장기공여 및 이식의 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영 문	Policy agenda for organizing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한중 ¹ , 손명세 ¹ , 박형욱 ¹ , 김춘배 ¹ , 박은철 ¹ , 강임옥 ²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영 문	H.J. Kim ¹ , M. Sohn ¹ , I.M. Kang ² , H.W. Park ¹ , C.B. Kim ¹ , E.C. Park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분 야	관 리	발 표 자	박 형 욱(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p>1. 연구 목적</p> <p>미국, 유럽 등의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장기공여 및 이식의 법적, 윤리적 특성과 일반인과 전문가계의 인식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장기공여 및 이식의 관리체계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장기공여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장기공여 및 이식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황분석, 법적·윤리적 특성 및 인식의 검토를 통한 문제점의 도출은 기존자료와 문헌고찰을 이용하였다. 특히 외국의 장기공여 및 이식 현황과 장기공여기구의 운영상황과약을 위해 미국 UNOS(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를 방문하여 분야별 각 전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협조받았다. 그리고 미국의 UNOS와 유럽의 ET(Eurotransplant)의 자료를 기초하여 장기공여 및 이식의 관리체계 개발, 장기공여 전산망의 운영, 장기공여 증진방안은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제안하였다.</p>				

3. 연구결과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신장이식의 총 건수는 4935례에 이르고 있으며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연평균 600례 이상의 신장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 이외의 다른 장기의 이식은 1988년 이후 뇌사공여자에 의해 드물게 시행되어 오다가 1992년부터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식 건수의 증가에 따라 의학협회는 뇌사판정의료기관과 장기이식의료기관을 인준하여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뇌사인정 입법화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뇌사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법적·윤리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료계의 합의하에 장기이식이 먼저 시행되었다.

2) 현재 장기이식을 신속하게 진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장기이식의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여 일부 언론은 장기매매의 가능성도 보도하고 있다.

4) 장기이식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유관단체의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장기공여 관리기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활한 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해서는 윤리, 학술, 배분, 전산, 회원, 법률 등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상임위원회와 학술연구처, 사무처 등이 필요하며 전국적인 장기공여망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장기공여망을 위해서는 지역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이식수술을 담당할 장기이식센터의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공여 전산망을 구축하여 관리기구와 장기이식센터를 연결하여 효과적이고 형평에 맞는 이식장기의 공여 및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공여기구 관리기구의 재원은 초기투자재원은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주로 하고 경상운영비는 주로 수여자가 부담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형태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4. 고찰

향후 이러한 장기공여 관리기구의 구성과 더불어 장기공여 및 이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활동 및 장기공여 등록기구의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이식의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장기이식 관련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